

농수산부 훈령 제 483 호

농약검사업무 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1. 7. 15

농 수 산 부 장 관

농 약 검 사 업 무 처 리 요 령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유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검사적용대상) 이 요령에 의한 검사 적용 대상은 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로 한다.

제 3 조(검사사항) 농약 검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무고시 또는 무등록 농약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2.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 유지 명령 위반
3. 휴지 또는 휴업신고 불이행
4. 농약에 대한 미표시 또는 허위의 표시
5. 금지된 농약의 진열 또는 판매
6. 농약에 대한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7. 광고의 방법 불이행
8.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또는 취급제한 기준 위반
9. 품질 불량농약 제조 또는 판매
10. 허위의 자체검사 성적서 제출
11. 검사 또는 시료수거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12. 보고명령 불이행
13. 시설보완 명령 위반

14. 장부의 허위기재, 미비치 또는 미보관

15. 기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검사방법) ①품질불량 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지역별 책임제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농수산부, 국립농업자재검사소, 국립식물 검역소) 또는 지방(시도, 시군)단속검사반의 검사와 시도간, 시군간 교체검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③중앙과 지방단속 검사반은 다음 각호의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 검사한다.

1. 대량소비지역
2. 부정농약 발생이 많은 지역
3. 주요 반입 반출 지역
4. 기타 농민·판매업자들의 고발 지역

③중앙단속반이 유통농약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약검사공무원을 입회토록 하여 단속사항을 인제하여야 한다.

제 5 조(처분기준) 검사결과 제 2조의 자가 위반한 경우 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322호로 개정된 농약관리법의 시행일인 81.3.2 이후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처분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81.3.2 개정발효된 농약관리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적용대상	위 반 회 수 (벌점)		
		1 회	2 회	3 회
1. 법 제 5 조 제 2 항 본문 또는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이를 판매한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허가취소 및 고발		
	판매업자	등록취소 및 고발		
2. 법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 유지 명령에 위반한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 고	당해품목 1 년간제조·수입 금지	당해품목 등록취소
	원제업자	경 고	당해원제 1 년간제조 금지	당해원제 등록취소
	판매업자	경 고	3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3. 법 제 8 조 제 1 항,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휴지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경 고	당해품목 또는원제 1 년간제조·수입 금지	당해품목 또는원제 등록취소
4. 법 제 10 조 제 1 항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휴업한 때	판매업자 방제업자	경 고	3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5. 가.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위반한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및 표시경정	당해품목 1 년간제조·수입 금지	당해품목 등록취소
	제조업자 수입업자	당해품목 등록취소 및 고발		
	판매업자	등록취소 및 고발		
나.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표시를 한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당해품목 등록취소 및 고발		
	판매업자	등록취소 및 고발		

위 반 사 항	적용대상	위 반 회 수 (벌점)		
		1 회	2 회	3 회
6 법 제 6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진열(보관) 또는 판매한때 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약 나.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한 농약 다. 자체 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라.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기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마.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판매업자	경 고	1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판매업자	등록취소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시 훼손된것 은 예외 로 함)	경 고	경 고	당해품목 1 년간제 조·수입 및 판매 금지
	판매업자	경 고	1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시훼손 된것은 예외로함)	경 고	경 고	당해품목 1 년간제 조·수입 및 판매 금지
	판매업자	경 고	1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7 가. 법 제17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경 고	당해품목 또는 원 제 3 월간 제조·수 입 금지	당해품목 또는 원제 등록취소
	판매업자	경 고	3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위 반 사 항	적용대상	위 반 회 수 (벌 점)		
		1 회	2 회	3 회
나.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항을 위배하여 광고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당해품목 또는 원 제 등록 취소 및 고발		
	판매업자	등록취소		
8. 법제17조 제 2항의 위반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경 고	당해품목 또는원제 3 월간 제조·수 입금지	당해품목 또는원제 등록취소
	판매업자	경 고	3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9. 법 제 1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 기준에 위반한 때	방제업자	6 월간 영업정지 및 고발	등록취소 및 고발	
10. 법 제 18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 제한기준에 위반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 고	당해품목 1 년간제 조·수입 금지	당해품목 등록취소 및 고발
	판매업자 방제업자	경 고	6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11. 법 제 19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농약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가. 벌점기준				
항 목 별		별 점		
		2 점	3 점	5 점
1)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유효성분 1.0%이하	10.0%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frac{\text{검사(표시)규격}-\text{분석치} \times 100}{\text{검사(표시)규격}}$	유효성분 1.0% 초과 10.0% 이하	7.5% 이하	7.5% 초과 13.0% 이하	13.0% 초과
	유효성분 10% 초과 25% 이하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 초과
	유효성분 25% 초과 50% 이하	3.0% 이하	3.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유효성분 50% 초과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
2) 물리성 불량	불량시			
3) 용중량 미달	2% 이상 미달시			
4) 원부재 사입기준 위반	1 회	2 회	3 회	
	경 고	2 점	3 점	
<p>나. 벌점에 따른 처벌기준(당해품목 벌점 합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2~4 점시 : 경고 ○. 벌점 5~7 점시 : 당해품목 1년간 제조, 수입금지 ○. 벌점 8점 이상시 : 당해품목 등록취소 				
12. 법 제19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체검사 성적서를 제출할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고 발		
	검 사 책 임 자	고 발		
13. 법 제1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시료의 수거를 거부 또는 기피할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판매업자 방제업자	1년간영 업정지및 고발		
14. 법 제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판매업자 방제업자	경 고	경 고	6월간 영업정지

위 반 사 항	적용대상	위 반 회 수 (벌 점)		
		1 회	2 회	3 회
15. 법 제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완 명령에 위반할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조·수 입정지 (시설보 완시까지 지)	일정기간 내 시설 미보완시 허가취소	
	원제업자	제조정지 (//)	일정기간 내 시설 미보완시 등록취소	
	판매업자 방제업자	영업정지 (시설보 완시까지 지)	일정기간 내 시설 미보완시 등록취소	
16. 법 제20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 대장등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그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할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당해품목 또는원제 1 년간제 조·수입 및 판매 금지	당해품목 또는원제 등록취소 및 고발	
	판매업자 방제업자	3 월간 영업정지	등록취소	
<p><u>비 고</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사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중 가장 중한 처벌로 조치한다. 2. 위반회수의 산정은 위반사항에 구분없이 최종 위반사항 적발일로 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년간 연속 경고시는 벌점을 합산 처분한다. 3. 각각 다른 위반사항으로 2회 적발되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의 2회 위반시 처벌조치 기준중 가벼운 처분을 과한다. 다만, 농약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되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